

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

『산림보호법』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37조의3 규정에 의거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02월 04일

김 천 시 장



1. 공 고 명 :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
2. 지정목적 : 산사태 및 토석류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
3. 대 상 지 : 김천시 남면 부상리 산146 외 29필지
4. 공고내용 :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이의신청
5. 공고기간 : 2020. 02. 04. ~ 02. 28.
6. 이의신청 : 공고기간 내
 - 가. 접 수 처 : 경상북도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(054-420-6755)
 - 나. 신청양식 :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
7. 지정예정일 : 2020. 3월 (이의신청 결정통지 및 지정심의로 변경될 수 있음)
8.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(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)
 - 가. 사망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 - 나. 사망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 - 다. 위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9. 경과조치 : 위 기간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(054-420-675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.
2.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.
3.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사항 1부. 끝.